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35

제출일자 : 2019. 3.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기 위함
-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와 민간위탁 시행

2. 센터현황

- 가. 시 설 명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나.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 ~ 2021. 12. 31.(3년)
- 다. 대상시설 : 31개소
- 라. 인력기준 : 3명(센터장 1, 직원 2)
- 마. 사 업 비 : 74,000천원 (국 37,000 도 11,100 군 25,900)
※ 2020년부터 매년 100,000천원 규모로 운영
- 바. 위탁사무
 - 1)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과 식사 지도
 - 2)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위생관리 지침과 위생교육 자료 개발
 - 4)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과 정보제공·공유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수탁기관 선정 절차

- 가.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 나. 선정기준
 - 1)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2)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 3)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센터시설의 설치 계획 방안 등

다. 자격요건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2)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FMS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라. 수탁기관 선정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4. 추진일정

- | | |
|----------------------|-----------------|
| 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 2019. 4. ~ 5. |
| 나. 위탁관련협약 체결과 공증 | : 2019. 6. |
|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 2019. 8. ~ 9. |

5.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붙임 1>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1) 당초 예산 : 100,000천원

※ 1회 추경 시 국·도비 감액으로 74,000천원으로 조정 계획

- 2) 비용추계서 : <붙임 2>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 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보조

나. 관련 조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 전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50%, 도비15%, 군비 35%로 추진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을 따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군비	26	35	35	38	38	172
	국비	37	50	50	55	55	247
	도비	11	15	15	17	17	75
	소계(a)	74	100	100	110	110	494
세출	군비	26	35	35	38	38	172
	국비	37	50	50	55	55	247
	도비	11	15	15	17	17	75
	소계(b)	74	100	100	110	110	494

(1) 2019년도

○ 비용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74백만원)

- 인 력 :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인건비 : 29백만원/1,600천원×3명×4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 45백만원(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 비용추계 : 7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2) 2020년도

○ 비용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100백만원)

- 인 력 :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인건비 : 59백만원/1,640천원×3명×12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 41백만원(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 비용추계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다. 재원조달 방안 : 불임

3. 기타 의견 : 없음

4. 작성자 :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원 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74	100	100	110	110	494
의존 재원	소 계	48	65	65	72	72	322
	국비 보조금	37	50	50	55	55	247
	도비 보조금	11	15	15	17	17	75
자체 수입	소 계	26	35	35	38	38	172
	지방세	26	35	35	38	38	17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의존재원(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재원 조달

3. 협의 사항

- 2019년 군비 26백만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군비 35백만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군비 38백만원 확보 요청